

의안번호	2210085
의 퇴 인	박주민의원
회 답 일	2025.05.12.
추계번호	25C2584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국가의 지원)	○ 국가는 제12조 ¹⁾ 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인건비 등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수련병원등에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 (국가의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국가의 지원(안 제3조)

- 개정안은 국가가 지도전문의²⁾ 인건비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하고 있음

1) 법 제12조(지도전문의의 지정)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의료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일 것

2.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

②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·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2) 동법 제2조의3에 따른 “지도전문의”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이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“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사업”의 ‘책임 지도전문의’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. 다만, 전공의 수련 지원에 대한 명문화로 인해 정부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으나,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 - 보건복지부의 “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사업”은 8개 전문과목* 및 인턴을 수련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책임지도전문의, 교육전담지도전문의, 수련지도전문의 수당, 전공의 과견 수련 지원 등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2025년 기준 2,332억원 배정
 - *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, 응급의학과, 흉부외과, 신경과, 신경외과
 - 참고로,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발표한 “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”에서 교육전담 및 책임 지도전문의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
 - 또한, 2025년 기준 “수련환경평가 실시 지원”에 9억 4,300만원을 배정하여 전산 시스템 구축(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설문조사, 수련환경 관리시스템, 전공의 전형 시스템 개발·운영 등), 인건비,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

[표 1] “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” 중 지도전문의 역할

구분	총괄 책임자	교육전담 지도전문의	책임 지도전문의
역할	프로그램 전반적 운영·관리 책임	전공의 전담 교육	전문과목별 수련 관리
		일대일 피드백, 실습 기회 부여 및 참관·지도	
수련업무 비중(예시)		20~30% 이상	40~50% 이상

자료: 보건복지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